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7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허성무 · 박지혜
박희승 · 이정문 · 민형배
박균택 · 한정애 · 양부남
어기구 · 이정현 · 이해민
조계원 · 허영 · 정진욱
박용갑 · 김현 · 최혁진
안도걸 · 서삼석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SKT, KT, 카드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

있지 않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도모하려는 것임. 아울러 민·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4, 제48조의4제5항 및 제8항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4(로그기록 보관 의무) ①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의 탐지·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, 인증기록, 권한 변경기록 및 주요 시스템 행위기록 등 관련 자료(이하 “로그기록”이라 한다)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, 대상, 절차 및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4제5항 중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”을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”으로, “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”를 “로그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민·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중 그

진행상황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고, 원인 분석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관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6 및 제4호의7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5.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45조의4(로그기록 보관 의무)</u> ①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의 탐지·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, 인증기록, 권한 변경 기록 및 주요 시스템 행위기록 등 관련 자료(이하 “로그기록”이라 한다)를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, 대상, 절차 및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) ① ~ ④ (생략) ⑤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</u>	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-----</u> ----- -----<u>로그기록을 보존하여야</u>

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.

⑥ · ⑦ (생략)

<신설>

⑧ (생략)

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의4. (생략)

<신설>

한다.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⑧ 민·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중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고, 원인 분석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관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

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4의4. (현행과 같음)

4의5.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

<u>4의5.</u> · <u>4의6.</u> (생략) 5. ~ 24. (생략) ④ (생략)	<u>4의6.</u> · <u>4의7.</u> (현행 제4호의5 및 제4호의6과 같음) 5. ~ 24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	--